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748호 2021. 10. 14.(목)

훈 령

- 사천시 훈령 제413호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-- 1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88호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고시 ----- 3
- 사천시 고시 제29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4
- 사천시 고시 제292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5
- 사천시 고시 제293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6

입법예고

- 사천시 공고 제1271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 7
- 사천시 공고 제1308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24
- 사천시 공고 제1309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 3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훈령 제413호

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1년 10월 14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1. 10. 14.>

공무직근로자 정수표(제6조제5항 관련)

부서별	계	단순노무원					도로보수원 ⑤	환경미화원 ⑥
		소계	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①	현장지도 단속감시 상담인부 ②	자격요 하인부 ③	단순잡 역부 ④		
총 계	203	141	2	5	41	93	8	54
본 청	소 계	102	94	2	5	18	69	8
	행정과	12	12			5	7	
	주민생활지원과	8	8			3	5	
	노인장애인과	4	4				4	
	여성가족과	14	14	1		9	4	
	세무과	3	3				3	
	회계과	1	1				1	
	문화체육과	7	7				7	
	관광진흥과	3	3				3	
	환경보호과	1	1				1	
	민원교통과	8	8		4		4	
	정보통신과	3	3				3	
	도시과	2	2		1		1	
	건설과	2	2				2	
	도로과	11	3	1			2	8
	우주항공과	5	5				5	
	지역경제과	2	2				2	
	녹지공원과	12	12			1	11	
	토지관리과	4	4				4	
의회	소 계	1	1				1	
	의회사무국	1	1				1	
직속기관	소 계	45	45			23	22	
	보건소	23	23			23		
	농업기술센터	22	22				22	
사업소	소 계	54						54
	환경사업소	54						54
출장소	소 계	1	1				1	
	신수출장소	1	1				1	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고시 제2021 - 288호

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고시

사천시에서 시행 할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0. 14.

사 천 시 장

1. 사 업 명 : 노뒤개저수지 개보수사업
2. 위 치 : 서포면 다평리 1389번지 일원
3. 사업의 목적 : 노후 저수지 보수·보강을 통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농경지를 보호하여 영농 편의 제공
4. 사업의 내용 및 구역
 - 가. 사업의 내용
 -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(노뒤개저수지)
 - 부대공사 1식
 - 나. 사업의 구역 : 서포면 다평리 1389번지 일원
5. 사 업 비 : 400백만원
6. 사업기간 : 2021. 10. ~ 2022. 10.(12개월간)
7. 사업의 효과 : 저수지 용수확보 능력, 내구성 증대 및 재해예방
8. 사업시행자 : 경상남도 사천시청
9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: 해당사항 없음
10.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: 사천시청 건설과(전화 055-831-3278)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29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10. 14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1- 10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1년 9월 28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경상남도 인공어초 설치사업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서포면 비토리 산46-17, 17-37, 14-7번지선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1,016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1. 9. 28. ~ 2050. 12. 31.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경상남도지사(수산자원과)
 - 나. 주 소 :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292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10. 14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1- 11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1년 9월 28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경상남도 인공어초 설치사업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마도동 130번지선 일원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1,040m²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1. 9. 28. ~ 2050. 12. 31.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경상남도지사(수산자원과)
 - 나. 주 소 :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293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10. 14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1- 12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1년 10월 12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영복항 어촌뉴딜 어선접안용 부잔교 설치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사천시 송포동 1526-1번지선 일원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2,303m²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1. 10. 12. ~2036. 10. 5.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)
 - 나. 주 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 1271호

『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4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감면 요율 변경(안 제23조)

나.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비율 변경(안 제23조의2 및 안 제32조)

다.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4조의2)

라.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4조의3)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- 마. 대부료 감면 요율 변경(안 제30조)
- 바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회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회계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

전화 : 831-2925 FAX: 831-6028)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 치 법 규 명 :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생 년 월 일 :

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임한”을 “위임된”으로, “시 공유재산”을 “사천시 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장은 시”를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천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시의회에서”를 “사천시의회에서”로, “시의회 사무국장”을 “사천시의회 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시”를 “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-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-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2 중 “따른 사용료의 조정”을 “따라 사용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그”로, “7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)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·수익을 허가한 경우
2.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경작자에게 1천제곱미터 이하를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·수익을 허가한 경우

제24조의3(지역특산품 등의 범위)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남도지사 인증 농특산품
2. 「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품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3.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

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④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다른 대부료의 조정”을 “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”로, “7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영 제14조제6항”을 “영 제14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<u>위임한</u>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<u>시 공유재산</u>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·능률화를 통해 재정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위임된</u> ----- ----- -- <u>사천시 공유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관리책임) ① <u>시장은 시 공유재산</u>(이하 “공유재산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관리책임) ① <u>사천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천시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재산관리관)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시의회에서</u> 사용하는 행정재산 - <u>시의회 사무국장</u>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4조(재산관리관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사천시의회에서</u> ----- --- <u>사천시의회 사무국장</u>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</p>	<p>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----- -----</p>

때에는 대상범위, 기간, 사용료,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로써 따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

<신 설>

<신 설>

제23조의2(사용료의 조정) 영 제16

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2(사용료의 조정) -----

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비율은
100분의 70으로 한다.

<신 설>

--- 따라 사용료를 감액조정하
는 경우에는 그 -----
----- 100-----.

제24조의2(수의계약에 따른 대부

등)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
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
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
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
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
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
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
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
에 대하여 사용·수익을 허가
한 경우
2.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
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
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
위하여 경작자에게 1천제곱
미터 이하를 수의계약에 따른
대부 및 사용·수익을 허가한
경우

<신 설>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(생략)

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
가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
나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

제24조의3(지역특산품 등의 범위)

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남도지사 인증 농특산품
2. 「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품
3.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

다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
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
대부료의 100분의 20

2.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의
시설

가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
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
우 대부료의 100분의 30

나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
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
대부료의 100분의 20

다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
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
대부료의 100분의 10

3.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
시설

가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
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
우 대부료의 100분의 30

나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
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
대부료의 100분의 20

다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
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
대부료의 100분의 10

4.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

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
부료의 100분의 50 감경

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
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
산품을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
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
와 같다.

1.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
과 : 100분의 30
2.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
과 : 100분의 25

<신 설>

④ ~ ⑥ (생 략)

제32조(대부료의 조정) 영 제34조
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 비율은
100분의 70으로 한다.

제33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(생
략)

② 영 제14조제6항 및 영 제32
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
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단,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

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
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
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
한다.

④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
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
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
항까지와 같음)

제32조(대부료의 조정) -----
--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
는 경우 그 -----
----- 100-----.

제33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영 제14조제7항 -----

-----.

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삭제

⑤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⑤ (현행과 같음)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관 련 법 규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4. 7. 7.,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18. 1. 9., 2018. 12. 4., 2020. 12. 22.>

8.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24.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제14조(사용료)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6. 7. 12., 2017. 7. 26., 2020. 12. 22.>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(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·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·수익허가기간)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2.>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(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7. 7., 2020. 3. 31., 2020. 12. 22.>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, 2015. 7. 20., 2018. 12. 4., 2020. 12. 22.>

1.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30
2.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50
3.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

제29조(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, 2014. 7. 7., 2015. 2. 16.,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17. 7. 26., 2018. 1. 9., 2018. 12. 4., 2019. 7. 2., 2020. 12. 22.>

12.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28.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(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)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2.>

제34조(대부료의 조정)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대한 대부료(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7. 7., 2020. 3. 31., 2020. 12. 22.>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제35조(대부료의 감면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. <개정 2011. 11. 16., 2016. 7. 12., 2018. 12. 4., 2020. 12. 22.>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: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50
 - 가.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
 - 나. 제29조제1항제20호·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
 - 다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30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- 1308호

「사천시 건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 월 14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 되어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방법 등을 시·군 건축 조례에서 시·도의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현장조사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·지정·취소 및 명부의 관리 등을 규정하는 「경상남도 건축 조례」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 함.(안 제22조)

사 천 시 공 보

제 748 호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민원/공개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건축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3204 FAX : 831-6034)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사천시 건축조례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생 년 월 일 :

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공개모집을 하거나,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축사협회 사천시 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제22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관 련 법 규

□ 건축법

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14., 2014. 5. 28.>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·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□ 건축법 시행령

제20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8.>

1.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

2.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대행건축사”라 한다)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·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8.>

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. <신설 2021. 1. 8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1. 1. 8.>

[전문개정 2008. 10. 29.]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 1309호

「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4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반환, 수강료 반환기준 조정(안 제11조 및 제12조 별표 3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 : 여성가족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360,

FAX: 831-6520)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 제정안 내용	의견	비고

사 천 시 공 보

제74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회복지관은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비영리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을 “비영리법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호가목 중 “시의”를 “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시설사용 5일 이전에”를 “시설사용일 5일 전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시설사용 4일 전에”를 “시설사용일 1일 전까지”로, “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고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”를 “90퍼센트를 반환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운영) ① <u>사회복지관은 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</u> 다만,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<u>비영리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</u>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11조(사용료 반환) 시장은 사회복지관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</p> <p>가. 시장이 <u>시의 사정</u>으로 시설사용을 정지시킨 경우</p> <p>나.·다. (생략)</p> <p>라. 사용 예정자가 <u>시설사용 5일 이전에</u>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</p> <p>2. 사용예정자가 <u>시설사용 4일 전에</u> 시설사용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<u>위약금 10</u></p>	<p>제4조(운영) ① <u>사회복지관은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비영리법인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사용료 반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----- <u>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</u> -----</p> 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 <u>시설사용 일 5일 전까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 <u>시설사용일 1일 전까지</u> -----</p> <p>----- <u>90퍼센트</u></p>

퍼센트를 공제하고 90퍼센트
를 반환하여야 한다.

3. (생략)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다.

를 반환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[별표 3]

수강료 반환기준(제12조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우		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	납부한 수강료 전액
2. 제12조제2호에 따른 경우	가.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강개시 전	납부한 수강료 전액
		총 수강시간의 1/3 경과 전	납부한 수강료의 70%
		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전	납부한 수강료의 50%
	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아니함	
	나.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		※ “수강기간”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 ※ “총 수강시간”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 ※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